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개정

調 査 部

보건사회부고시 제81—47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981. 8. 1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불량식품제조와 제품의 품질저하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법 제23조의 3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영업 및 품목허가의 적정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업종 등) ①영업허가기준의 적용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과자류제조업
2. 엿류제조업
3. 어육연제품제조업
4. 장류제조업
5. 달류제조업
6. 두부류제조업
7. 보존음료수제조업

②품목허가기준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품목으로 한다.

1. 통조림, 병조림 제조영업의 품목
2. 청량음료제조영업의 품목
3. 인스탄트 식품제조영업의 품목
4. 식품가공업의 품목(임가공 형태는 제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개정

제3조 (영업허가기준)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영업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
2. 제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시설이 전자동기계화 되어 있는 경우(두부류제조업에 한함)
3. 전량수출 및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합작 또는 기술도입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
4. 전량수출의 경우(보존음료수 제조영업)

제4조 (품목허가기준)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품목의 허가는(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영업의 품목허가

- 가. 과실류는 과실을 주성분으로 한 쪽이나 과실을 주성분으로 하여 이를 절단된 상태로 고형물이 있는 것 또는 과실을 주성분으로 한 밀 상태로 된 것.
- 나. 채소류는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채소의 원형이 남아 있는 것.
- 다. 육류는 육류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것.
- 라. 곡류는 곡류를 주성분으로 가공한 것은 곡류원형의 고형물이 있는 것.
- 마. 어패류는 어패류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것.
- 바. 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통조림 또는 병조림으로 식품고유의 보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청량음료 제조영업의 품목허가

- 가. 탄산을 함유한 음료(광물질과 탄산가스를 인공으로 가하여 만든 음료도 이에 포함)의 경우
- 나. 유음료인 경우에는 생유 또는 우유를 주원료로 한 경우
- 다. 유산균음료에 사용하는 유제품의 주원료는 탈지분유와 탈지유등으로 하여야 하고 유고형분의 총함량은 1% 이상으로 한 경우
- 라. 과·채류 또는 곡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경우

3. 인스탄트식품의 제조품목허가는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가. 조리의 간편, 운반에 용이하고 보존성이 높으며 식생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나.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성상등이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식품가공업의 품목제조허가

- 가. 일반적인 가공식품류
순대류, 햄버거류, 인조육류, 절임통닭류 등의 경우
- 나. 단순 혼합가공식품류
미수가루등 단순히 식품의 원료를 혼합 가공하는 경우

부 칙

①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허가받은 품목허가는 1981.9.30까지 이 고시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